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「산림보호법」이 개정시행(법률 제11351호, 2012. 8. 23)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·관리하기 위하여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9에 따라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

나.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 우려 여부,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등 위원회 기능을 정함(안 제3조)

다.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4조)

-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.
-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함.
- 위원은 성주군 소속 공무원 및 산사태·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관련단체 임직원, 성주군 주민으로 구성함.

라.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5조)

마.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(안 제6조)

바.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개최 통보, 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
사. 위원회 출석 등 위원의 의무와 의무 위반 위원에 대한 위촉해제 및 재위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아.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제9조)

자. 심의 안건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)

차. 상정안건의 심의의결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
카.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)

타. 안건 심의를 위한 현지조사 및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3조～제14조)

파. 간사의 임명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5조)
하.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6조)

4. 관계법령
○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 9

5. 검토보고

○ 본 조례는 2012년 2월 22일자로 산림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발생 취약지역을 지정·관리하기 위한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로서,

○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취약지역에 대하여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,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계획수립, 인명 대피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산림재해(산사태)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

○ 상위법 검토결과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